

[별표 4의2]

**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가능 점수(제64조제1항 관련)**

등급 (비율)	평가가능 점수
수 (20%)	64점 이상 70점 이하
우 (40%)	51점 이상 64점 미만
양 (30%)	39점 이상 51점 미만
가 (10%)	38점

[별표 4의3]

**근무성적평가점수 반영기간 및 반영방법(제65조제2항 관련)**

1.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기간

구 분	반 영 기 간
5급	최근 3년
6급 및 7급	최근 2년
8급이하	최근 1년

2.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방법

구 분	5급	6·7급	8급이하
계	100%	100%	100%
최근 1년 이내	34%	50%	100%
최근 1년전 2년 이내	33%	50%	-
최근 2년전 3년 이내	33%	-	-

<예 시>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산정

※ 5급 공무원의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경우

⇒ (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× 34%) + (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× 33%) + (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× 33%)